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542호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온천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97호(2019.12.25.)로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24-491호(2025.1.1.)로 변경 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97-6번지 일원의 온천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 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4) 및 동래구 건축과(☎051-550-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I.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 변경사유
-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온천-재건축-1 정비예정구역 범위를 주변 여건 및 도시관리계획의 연계성, 구역계 정형화를 고려하여 변경함.

2. 변경내역

지정 구분	연번	구역명	면적 (천㎡)	위 치	토지이용 계획	사업 추진단계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 획	비고
기정 ----- 변경	168	온천 -재건축-1	20.8 ----- 19.9	온천2동 397-6번지 일원 (온천삼익)	개발유도	정비구역 지정	2014년	3단계	면적변경 (감 0.9천㎡)

Ⅱ.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규	재건축사업	온천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동래구 온천동 397-6번지 일원	19,927	-

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계		19,927	100.0	-
	택 지	소 계	19,416	97.4	-
		공동주택	19,416	97.4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511	2.6	-
		도 로	511	2.6	-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9,927	-	19,927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9,927	-	19,927	100.0	-

○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분담금 추산액	총수입 추산액	총사업비 추산액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추정비례율
	421,510,605,725원	228,766,225,852원	192,112,000,000원	100.33%
산출근거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 • 추정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98	15	집산 도로	742	온천동 (중로2-69)	온천동 (중로1-53)	일반 도로	-	‘72.12.30. (건고555호)	-
변경	중로	2	98	15~20 (3)	집산 도로	742 (156)	온천동 (중로2-69)	온천동 (중로1-53)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노폭확폭

※폭원 및 연장의 ()는 정비구역 내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98	중로2-98	일부구간 노폭확폭 (B = 3m, L = 156m)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중로2-98호선 내 사업지와 접한 구간을 노폭 확폭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신규	1	19,416	1	온천동 397-6번지	19,416	공동주택
	-	511	-	온천동 397-6번지	511	도 로
	계	19,927	-	-	19,927	-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온천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19,927	1-1	19,416	온천동 397-6번지	4	-	-	4	-	공동 주택
			도로	511	온천동 397-6번지	-	-	-	-	-	도로
			계	19,927	-	4	-	-	4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온천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19,927	1-1	19,416	온천동 397-6번지	공동 주택	30이하	281이하	102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 260%(개발유도) -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인센티브: 11.84% -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지역설계업체 참여): 5% - 지속가능 공동주택 인센티브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5% - 허용용적률: 260% + 11.84% + 5% + 5% = 281.84% - 계획용적률: 281%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부산시 건축조례」제39조의2에 따름							

○ 정비구역을 분할,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경우 관련계획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결합계획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신규	계	19,927	-	-	19,927	분할·결합없음	-
	1	19,416	1	온천동 397-6번지	19,416	-	공동주택
	-	511	-	온천동 397-6번지	511	-	도 로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고
환경보전 계 획	○대기질 - 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방진망 설치 - 운영시 단지내 청정연료 사용 ○수 질 - 공사시 토사유실방지포 설치,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 ○폐기물 - 공사시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 운영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 ○소음·진동 - 공사시 작업시간대 조절,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의 배치 및 선택, 공사차량의 차량속도 제한, 경적사용 및 공회전 금지	-
재난방지 계 획	○사업시행시 - 공사중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배수구역 별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유출수중 토사를 침전시킨 후 상등수만 방류토록 계획 - 절토 및 성토면의 활동과 사면안정에 대한 사면처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절·성토 사면에 적정구배를 적용하여 사면의 유실 및 붕괴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사면에는 줄때 및 평때를 조기에 시공하여 녹화함으로써 강우시 토사유출을 방지하여 사면의 안정화 계획 - 강우시 공사중에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지 작업시 절·성토사면의 안정을 기하고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비닐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사면 상하부에 측구 등의 배수시설 설치 ○운영시 -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 확보,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규제와 지속적인 관리 - 소방도로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단지내 노상주차 억제, 사고발생시 응급차 접근이 용이토록 계획	-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정비구역 인근에 입지하고 있는 온천초등학교, 유락여자중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부산전자공업 고등학교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설치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교육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며,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제반 취약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시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방지계획에 반영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계획세대수의 대부분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계획하여 정비구역내 조합원의 입주
추가 용이하도록 계획

- 또한, 정비구역 주변지역으로 공동주택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철거시 주택수급상의 문제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 주택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 모색

○ 세입자 주거대책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비 고
세입자 주거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름	-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비 고
사업 시행전	○관할 경찰서 순찰강화, 순찰초소 설치 요청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수립 시행	-
사업 시행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시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 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 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등의 설치를 고려함	-

○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빈집 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 관리계획 수립	-

○ 정비구역 내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동물의 보호 및 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전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적극 구조, 길고양이 개체 수 억제를 위한 중성화, 임시보호소 설치 등 동물의 보호 및 관리계획 수립	-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공개공지 설치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개 공지	신설	○위치 : 중로2-98호선 ~ 온천동 770-5 연결구간(단지내) ○면적 : 783㎡(최소폭 6m) ○내용 : 공공의 보행 편의를 위한 공간 조성	보행가로형 공개공지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온천1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래구 온천동 397-6번지 일원	-	증)19,927	19,927	-

○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신설	동래구 온천동 397-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결정 (A=19,927㎡)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9,927	-	19,927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9,927	-	19,927	100.0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98	15	집산 도로	742	온천동 (중로2-69)	온천동 (중로1-53)	일반 도로	-	72.12.30. (건고555호)	-
변경	중로	2	98	15~20 (3)	집산 도로	742 (156)	온천동 (중로2-69)	온천동 (중로1-53)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노폭확폭

※폭원 및 연장의 ()는 정비구역 내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98	중로2-98	일부구간 노폭확폭 (B = 3m, L = 156m)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중로2-98호선 내 사업지와 접한 구간을 노폭 확폭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19,927	-	-	19,927	-
-	1	19,416	1	온천동 397-6번지	19,416	공동주택
	-	511	-	온천동 397-6번지	511	도로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1-1	온천동 397-6번지	용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81% 이하
			높 이		• 102m 이하

※ 지정용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6호에 따른 주용도

■ 용적률 완화기준

구 분	내 용
용적률 완화기준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 : 260%(개발유도) • 공공시설부지제공 인센티브 : 11.84% -제공면적 : 511㎡ (계획공공시설511㎡-계획공공시설 내 존치되는 국공유지 0㎡ - 폐지되는 기존시설내 국공유지 0㎡ - 의무확보면적 0㎡) -제공후대지면적 : 19,416㎡ -산식 : {1.5×(제공면적÷제공후 대지면적)}×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 {1.5×(511÷19,416)}×300 = 11.84% • 지역설계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 5%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 5% • 허용용적률 : 260% + 11.84% + 5% + 5% = 281.84% • 계획용적률 : 281%이하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공개공지 설치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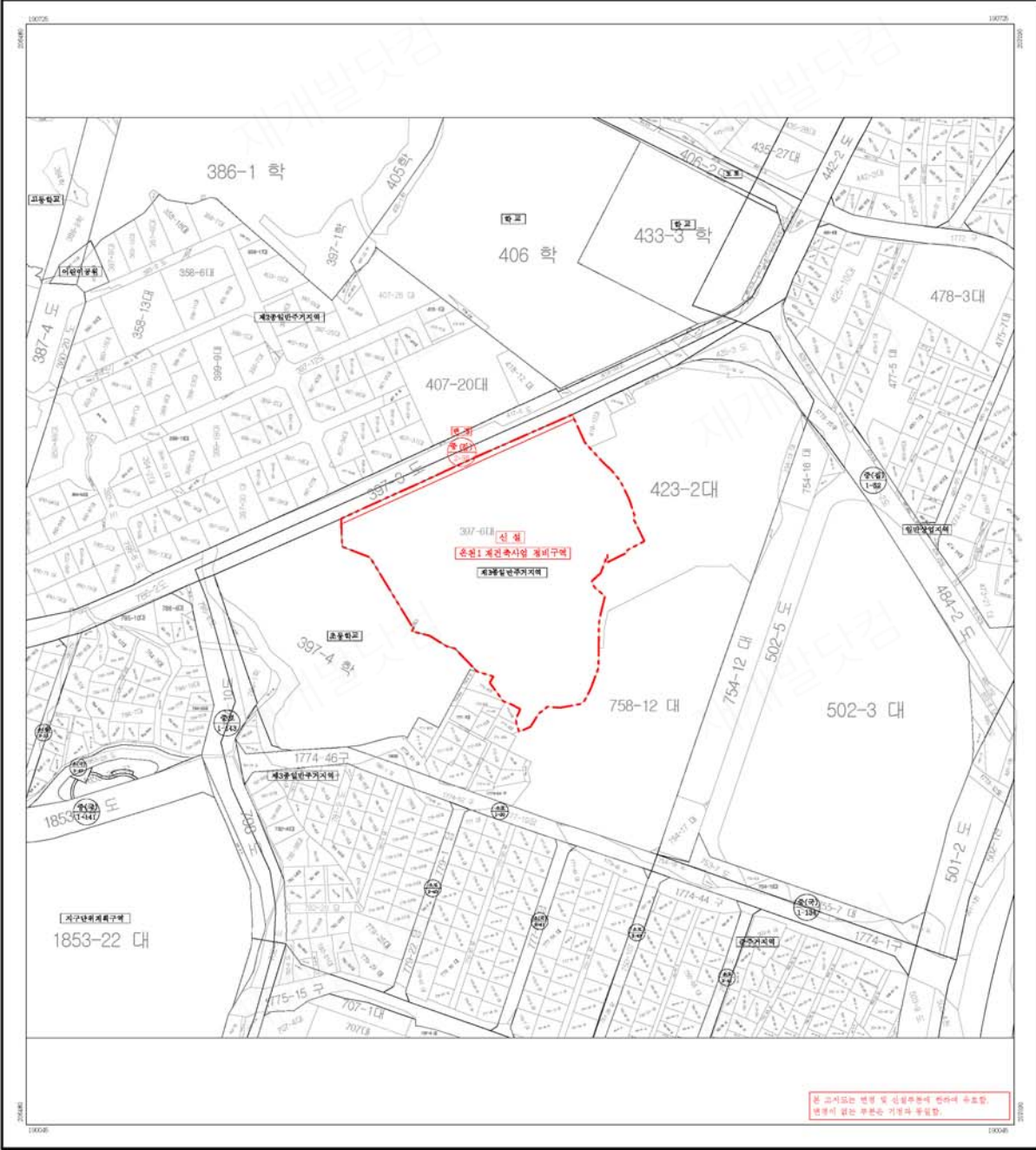
구 분		계 획	비 고
공개 공지	신설	○위치 : 중로2-98호선 ~ 온천동 770-5 연결구간(단지내) ○면적 : 783㎡(최소폭 6m) ○내용 : 공공의 보행 편의를 위한 공간 조성	보행가로형 공개공지

Ⅲ. 관계도면: 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동래구 건축과 비치)

-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온천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형도면 고시도

01



범례		축척 = 1:1,200		1. 순번도		행정구역도		인접도면	
	기 경			1		1		01	
	변 경 및 신 설								
	배 지								

온천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형도면 고시도

-정비구역 및 용도지역 결정도-

01



범례

기정

변경 및 신설

폐지

축척 = 1:1,200

1. 순번

행정구역도

인접도엽

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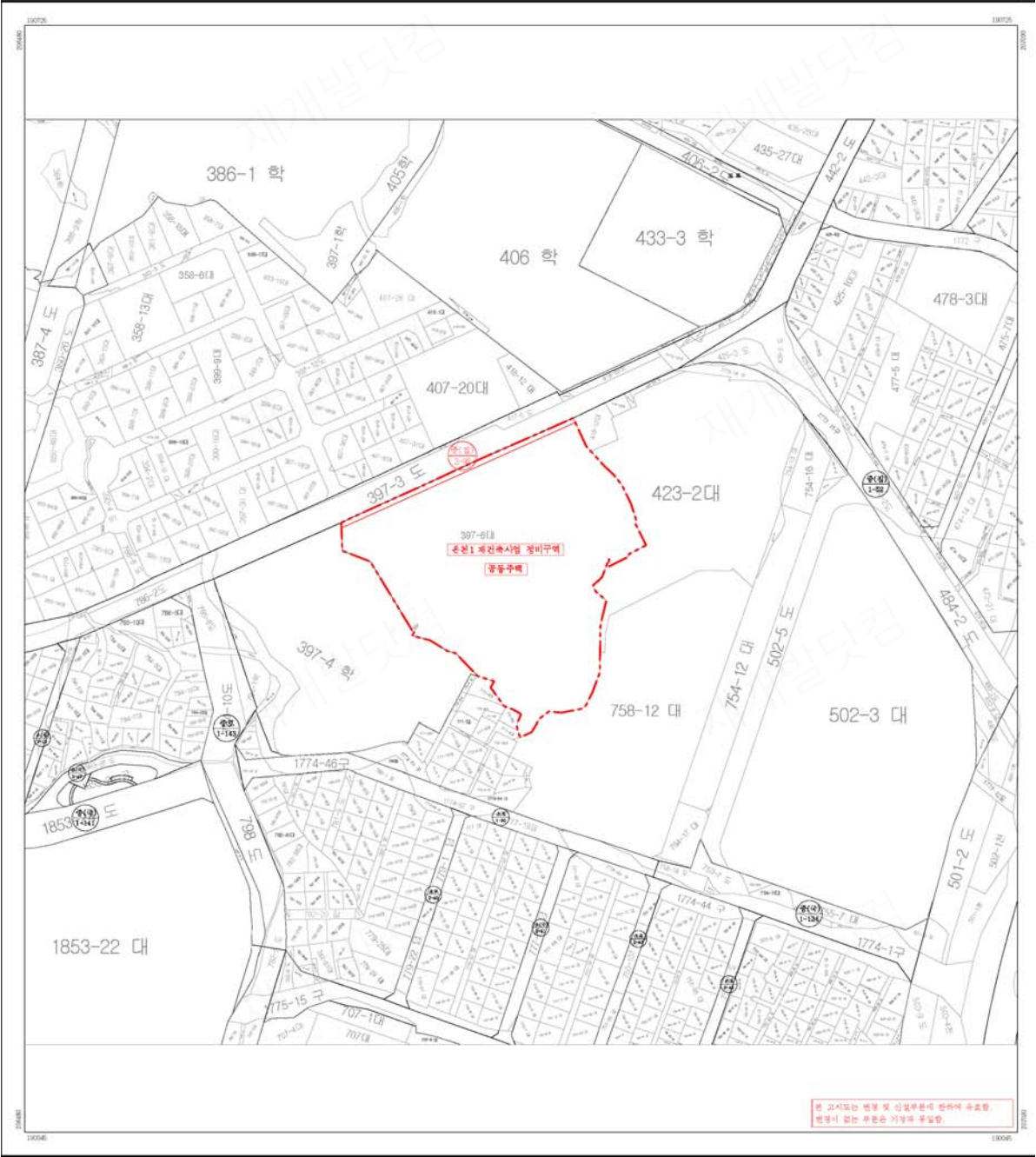
지정권자	부산광역시청	지정일자	2026. 01. 07.
고시번호	2026. 01. 07.	고시번호	제2025 - 542호
작성자	이영주	작성년월일	2026. 01. 07.
지각권소유 및 발행자	동래구청		

구분	작성자	입안권자	결정권자
소속	건축과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직위	-	건축과장	도시경비과
직명	지방시설시기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명	이영주	김유경	정태원
확인인			

온천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형도면 고시도

-토지이용계획도-

01



범례

기정

변경및신설

폐지

축척 = 1:1,200

1. 순번

행정구역도

인접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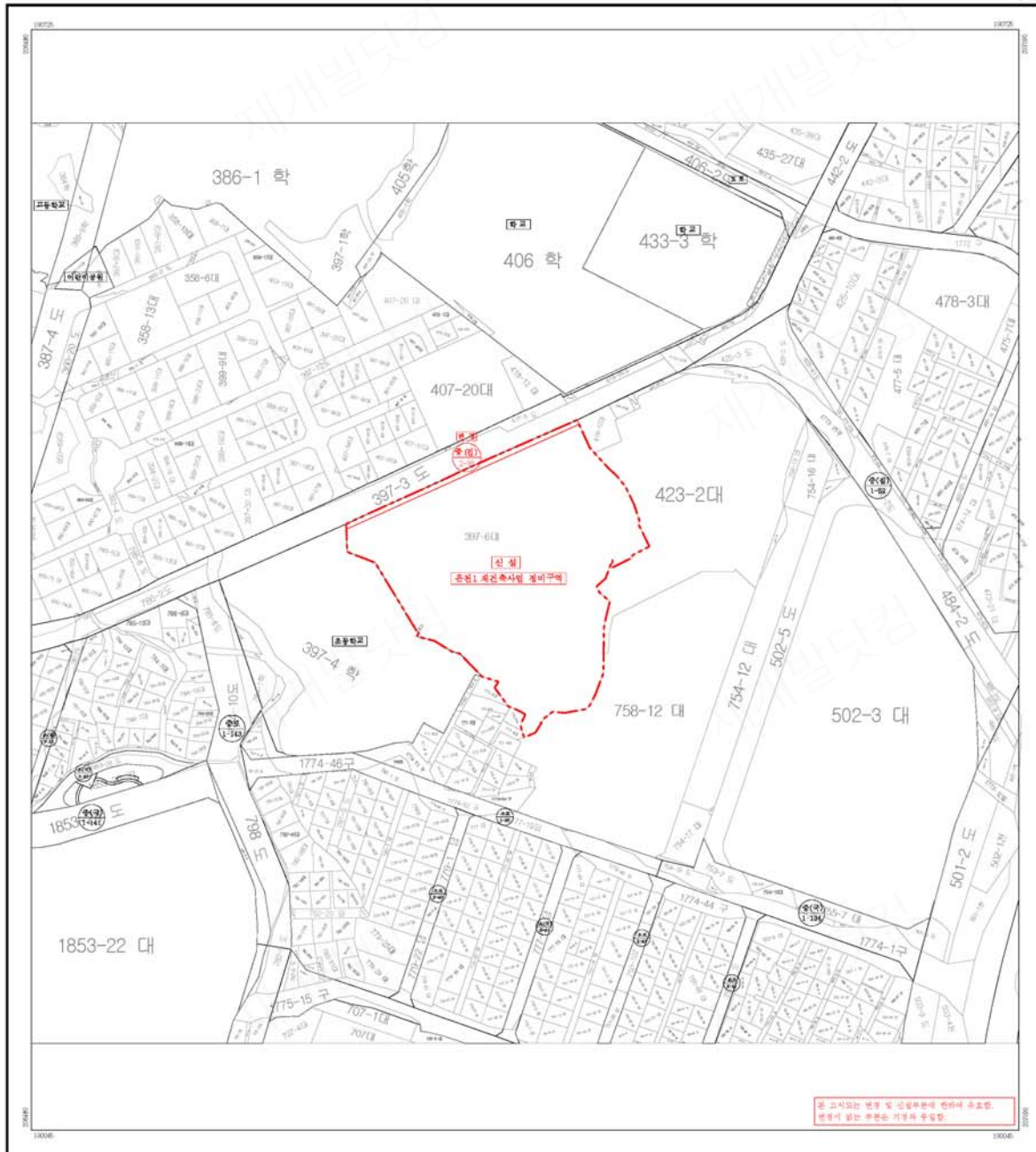
1

01

지정권자	부산광역시청	지정일자	2026. 01. 07.
고시번호	2026. 01. 07.	고시번호	제2025 - 542호
작성일자	이영주	작성년월일	2026. 01. 07.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동래구청		

구분	작성일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결정권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직위	-	재개발부장	건축과장	-	재건축팀장	재건축팀장
직명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성명	이영주	김유경	정태원	김효신	김철석	김철석
확인인						

01



☐ 기 정
☐ 변 경 및 신 설
☐ 폐 지

축척 = 1:1,200



1. 서론

행정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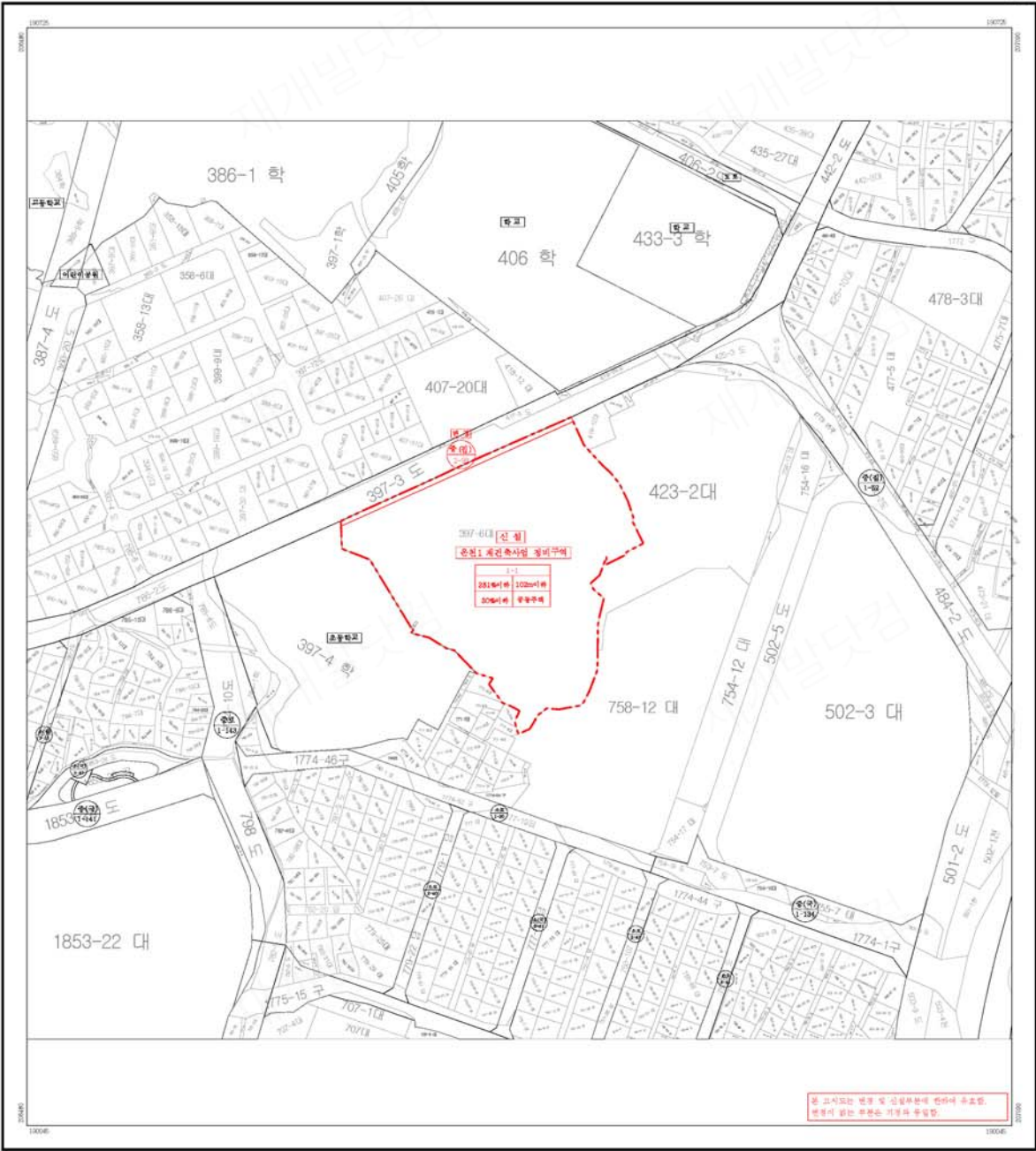
인접도업

1		
	01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건축과	1차 확인자 건축과	2차 확인자 건축과장	1차 결정권자 도시경비과	2차 결정권자 도시경비과장 재건축담당
직명	지방시설설치기	지방시설주조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명	이영주	임용경	장태원	김효신	김원석
확인인					

온천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형도면 고시도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01



기 경

변 경 및 신 설

폐 지

획지명

유지물

높이

연세물

수용도

축척 = 1:1,200

지 정 권 자

부 산 장 역 시 장

지 정 일 자

2026. 01. 07.

고 시 년 도

2026. 01. 07.

고 시 번 호

제2025 - 542호

라 성 자

이 영 주

라 성 년 월 일

2026. 01. 07.

지 작 권 소 유 및 발 행 자

동래구청

1. 온천동

행정구역도

인접도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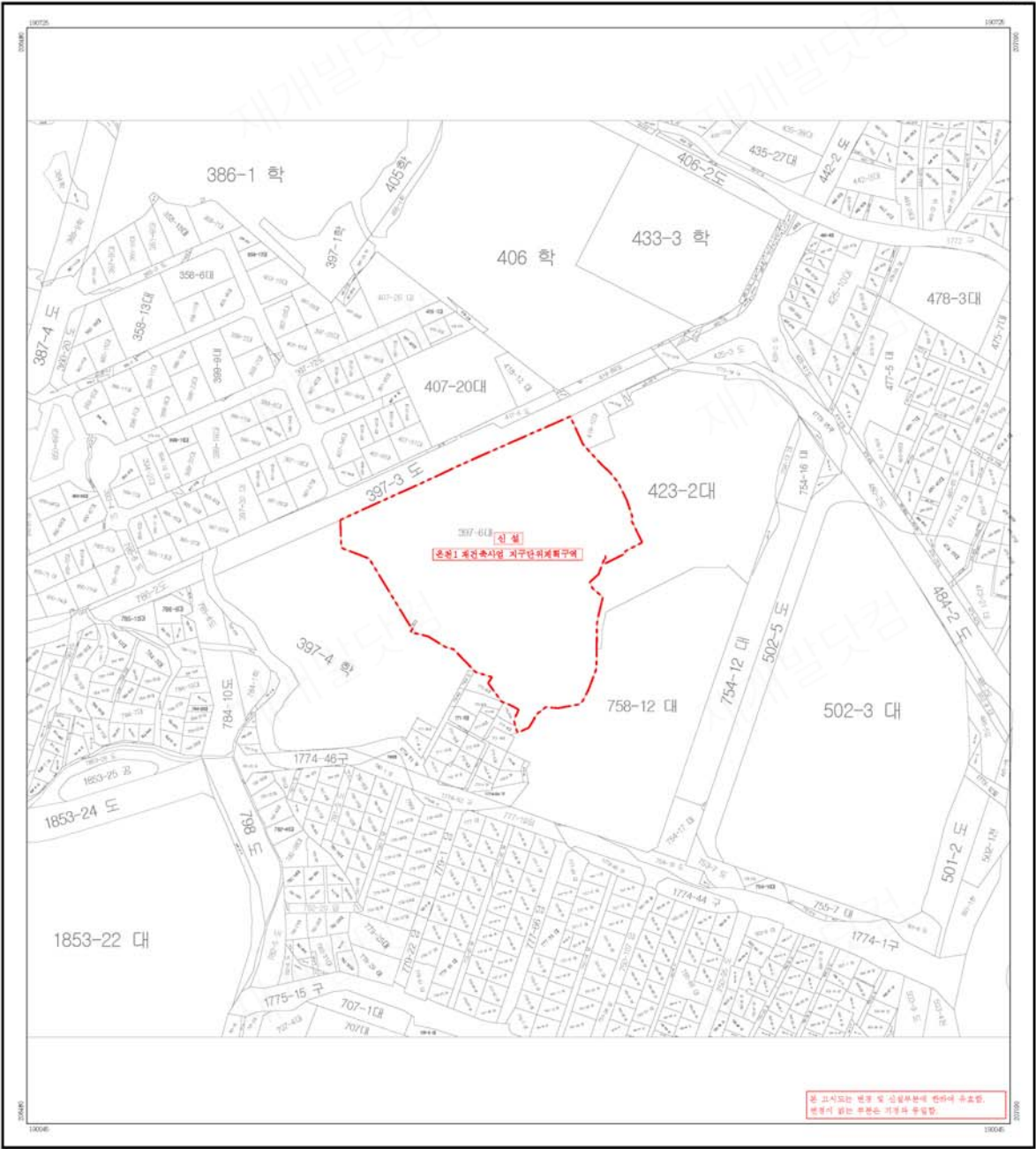
01

구 분	입 안 권 자			결 정 권 자	
	작 성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도시경비과	도시경비과
직 위	-	재개발재정	건축과장	-	재건축팀장
직 명	지방시설시기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이 영 주	김 유 경	정 태 원	김 효 신	김 철 식
확인인					

온천1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01



범례

기경

변경및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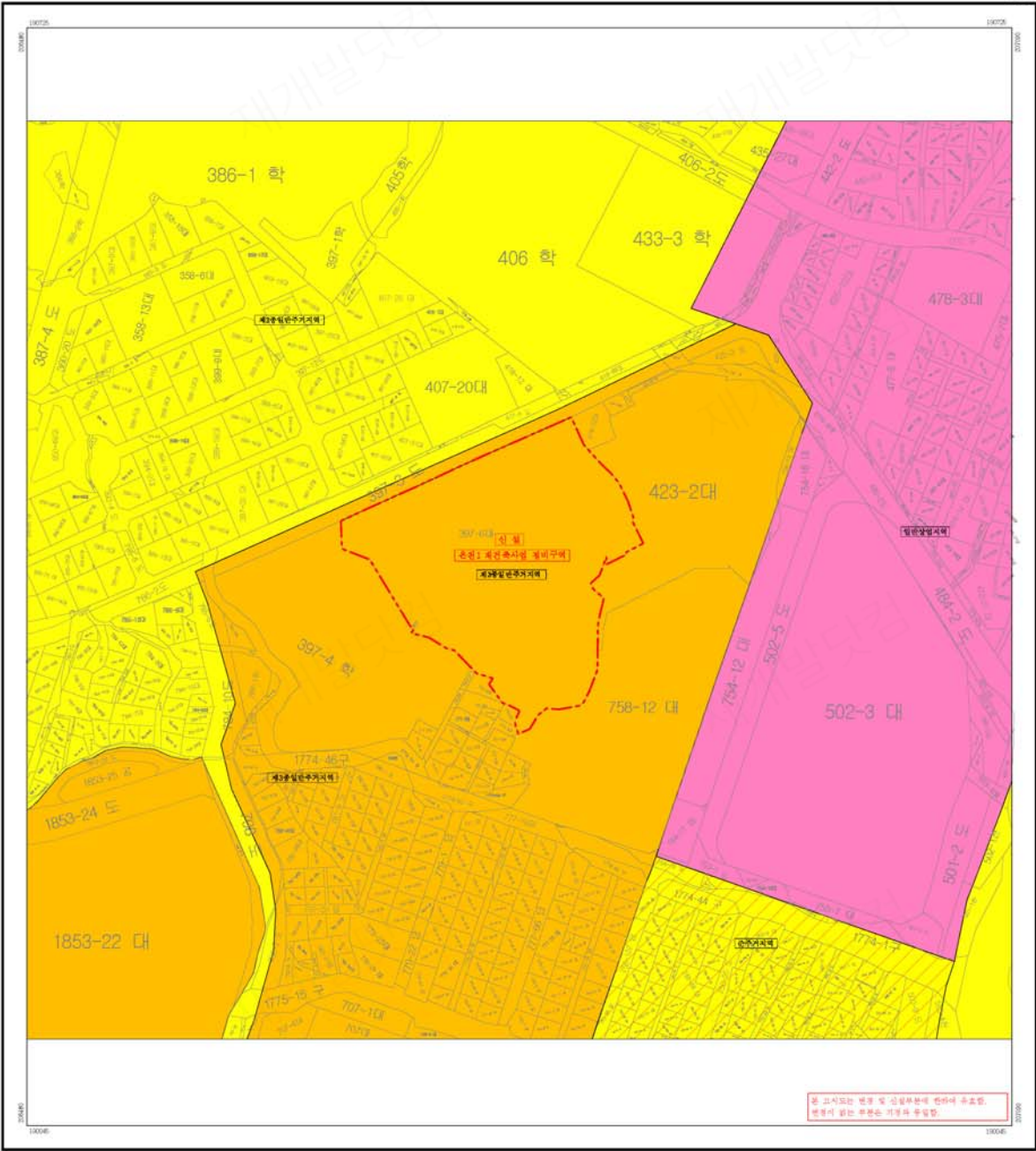
지정권자	부산광역시청	지정일자	2026. 01. 07.
고시번호	2026. 01. 07.	고시번호	제2025 - 542호
작성일자	이영주	작성년월일	2026. 01. 07.
지각권소유 및 발행자	동래구청		

1. 순번

행정구역도	인접도엽
1	01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도시경비과	도시경비과
직위	-	재개발재정	건축과장	-	재건축담당
직명	지방시설시기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명	이영주	김유경	정태원	김효신	김철식
확인인					

온천1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₀₁



범례	
	기 경
	변 경 및 신 선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지 정 권 자	부산광역시청	지 정 일 자	2026. 01. 07.
고 시 년 도	2026. 01. 07.	고 시 번 호	제2025 - 542호
과 성 자	이영주	과 성 년 월 일	2026. 01. 07.
지각권소유 및 발행자	동래구청		

행정구역도		인접도면	
1	01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도시경비과	도시경비과
직 위	-	재개발재정	건축과장	-	재건축담당
직 명	지방시설시기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이영주	김유경	정태원	김효신	김철식
확인인					

온천1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01



범례

기정

변경 및 신설

폐지

도로



지정권자	부산광역시청	지정일자	2026. 01. 07.
고시번호	2026. 01. 07.	고시번호	제2025 - 542호
작성자	이영주	작성년월일	2026. 01. 07.
지각권소유 및 발행자	동래구청		

행정구역도

인접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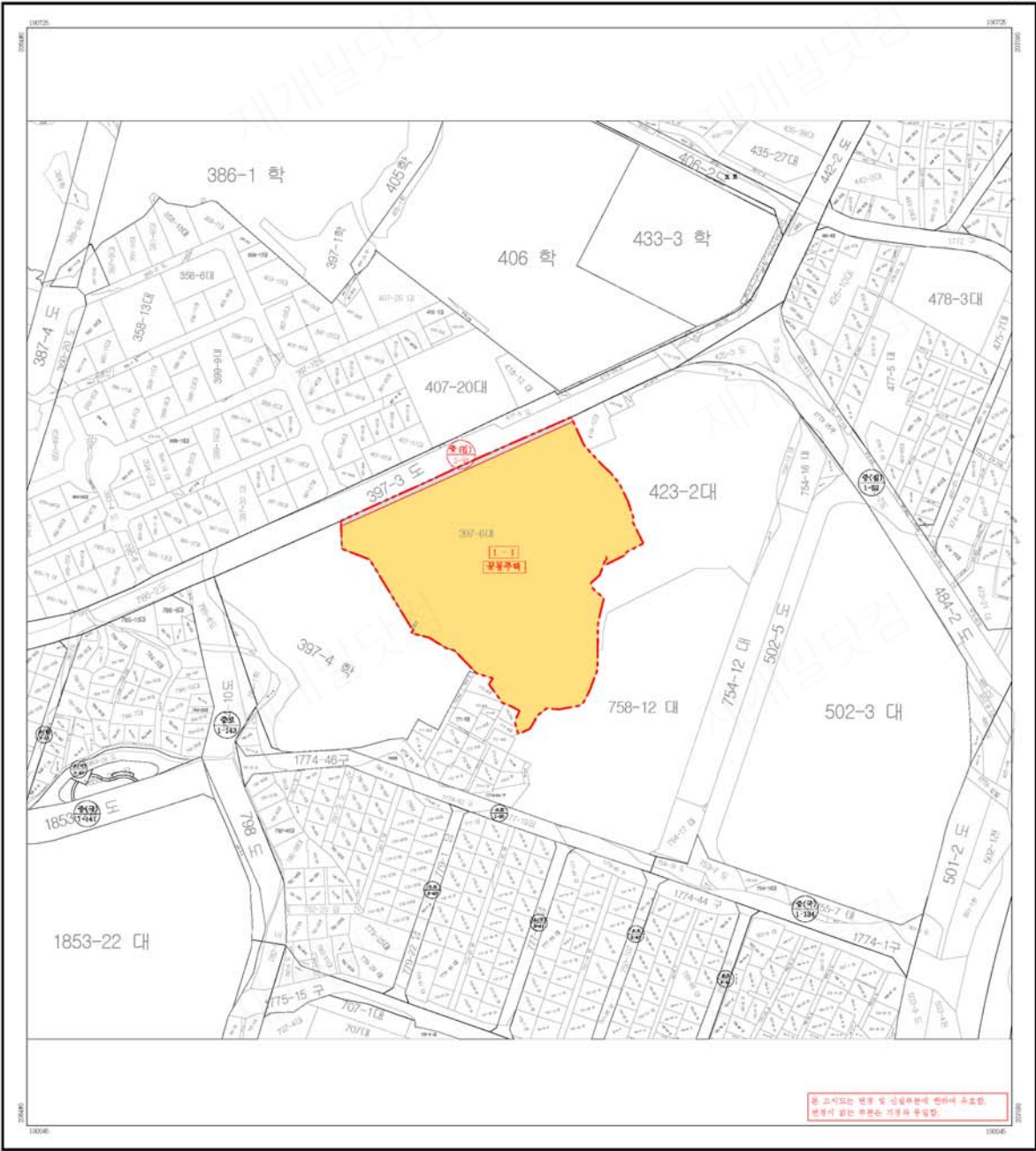
1	01
---	----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도시경비과	도시경비과
직위	-	재개발재정	건축과장	-	재건축팀장
직명	지방시설시기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명	이영주	김유경	정태원	김효신	김철식
확인인					

온천1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

01



가 경

도 도

변 경 및 신 설

공 동 주 벽

가 구 및 획 지 번 호

1-1

축 척 = 1:1,200

지 정 권 자

부 산 장 역 시 장

지 정 일 자

2026. 01. 07.

고 시 년 도

2026. 01. 07.

고 시 번 호

제2025 - 542호

라 성 자

이 영 주

라 성 년 월 일

2026. 01. 07.

지 작 권 소 유 및 발 행 자

동래구청

1. 순번

행정구역도

인접도엽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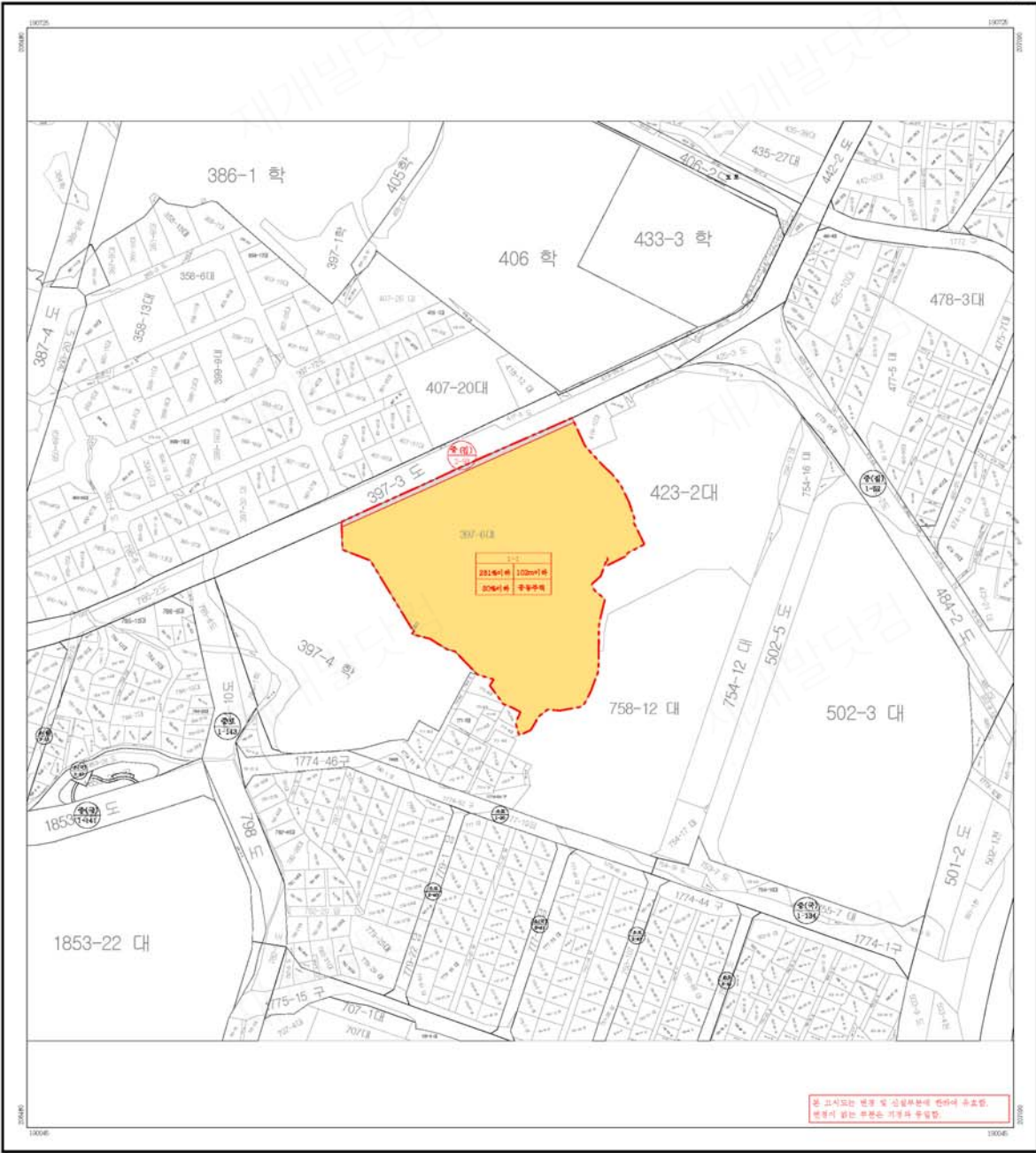
01

구 분	입 안 권 자			결 정 권 자	
	작 성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진 측 과	진 측 과	진 측 과	도시경비과	도시경비과
직 위	-	재개발재정	건축과장	-	재건축팀장
직 명	지방시설시기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이 영 주	김 유 경	정 태 원	김 효 신	김 철 식
확인인					

온천1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도-

01



범례

기경

변경 및 신설

도로

공동주택

희지명

용지율

높이

인폐율

용도

축척 = 1:1,200

지정권자

부산광역시청

지정일자

2026. 01. 07.

고시번호

제2025 - 542호

작성자

이영주

작성년월일

2026. 01. 07.

지각권소유 및 발행자

동래구청

행정구역도

인접도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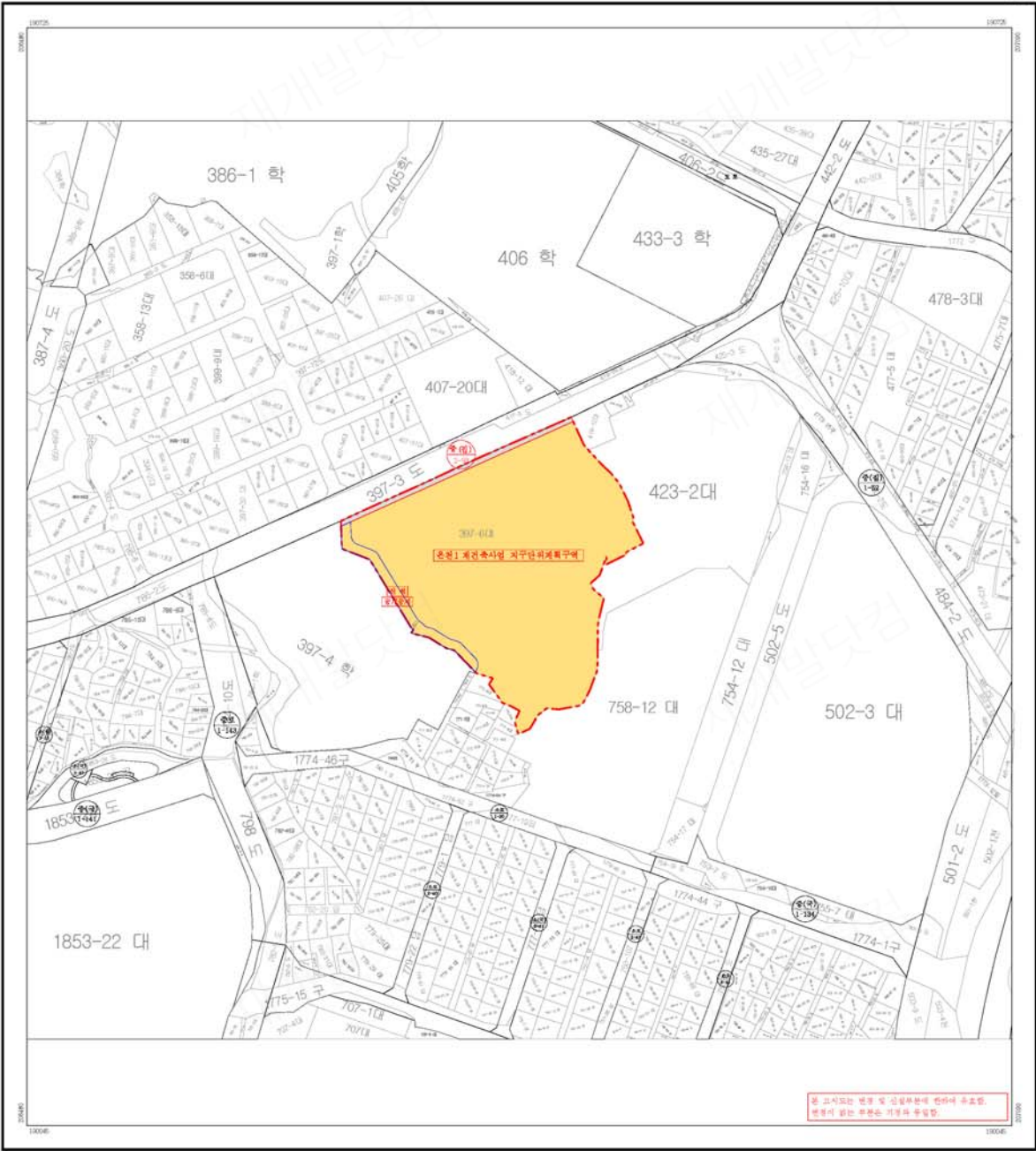
01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도시경비과	도시경비과
직위	-	재개발재정	건축과장	-	재건축팀장
직명	지방시설시기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명	이영주	김유경	정태원	김효신	김철식
확인인					

온천1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01



범례	
	기경
	변경 및 신설
	도로
	공동주택
	공개공지



지정권자	부산광역시청	지정일자	2026. 01. 07.
고시번호	2026. 01. 07.	고시번호	제2025 - 542호
작성일자	이영주	작성년월일	2026. 01. 07.
지각권소유 및 발행자	동래구청		

행정구역도		인접도엽	
1		01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일자	1차 확인일자	2차 확인일자	1차 확인일자
소속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도시경비과
직위	-	재개발재정	건축과장	-
직명	지방시설시기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성명	이영주	김유경	정태원	김효신
확인인				